

## 2025년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(2차)

「횡성군창업보육센터」에서는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장소 제공을 원하는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9. 11.

### 횡성군수

#### 1. 모집개요

- 입주장소 : 횡성군 횡성읍 청용길 19(목계리 43-3) 횡성군창업보육센터
- 입주예정일 : 2025. 10월 중 (입주선정 심의 후 입주계약 체결 완료시)
- 모집규모 : 총 1개실 (2층 202호, 56m<sup>2</sup>)
- 입주기간 : 3년 (1회에 한하여 심사 후 2년 연장가능)
- 입주자 부담(예정)

구 분	금 액
입주보증금	1,696,000원 [ 100,000원 / 평(3.3m <sup>2</sup> ) * 면적 ] *선납
임대료	886,250원(부가세 포함) *선납(감정가 재산정시 변동 가능)
개별 부담	공제금(화재보험), 전기, 수도, 인터넷, 보안 등 기타 실비

※ 집기비품 및 냉난방기는 입주자가 별도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함

#### 2. 입주자격 및 대상업종

- 입주유형 분류(참고)
  - 연구실형 : 제조업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하는 자

- 공장형 : 시제품의 개발 및 초기 생산이 가능하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

## ○ 입주자격

- 예비창업자: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(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)
-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자
  - ↳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서 필요(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)
- 「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8조에 따라 횡성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함

### 신청자격의 제한
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
- 휴·폐업 중인 자
- 입주가능업종에 해당하더라도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36조에 의거 농공단지내에 입주가 제한된 사업장 (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,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)
- 폐수, 소음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
-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
- 위·변조 등 허위문서 제출자
- 기타 본 센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

※ [참고1] '창업인정 기준'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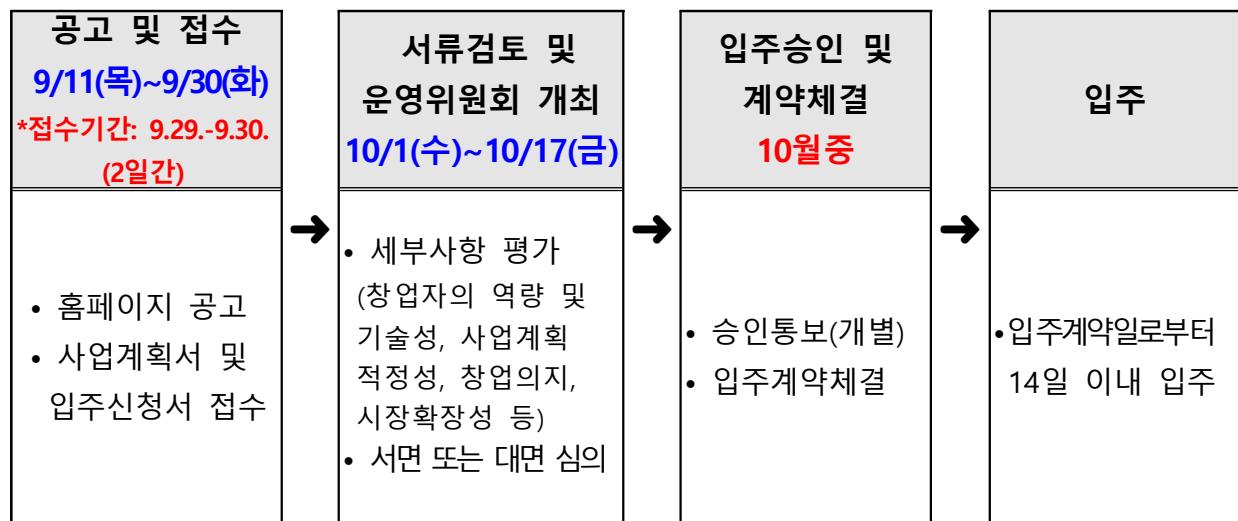
## ○ 입주대상업종

- 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1항에 따른 제조업
- 2) 농·축·수산물 및 제제제작업자 (선발시 우대)

업종코드	제조업종명
C10	식료품 제조업
C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C20	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
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
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C33	기타제품 제조업

### 3. 모집일정 및 선정방법

#### ○ 모집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#### ※ 대면심사 (발표 및 질의응답) 일정은 별도 통보

#### ○ 선정방법 :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

-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,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	평가내용	배점
정량 평가 (50점)	창업역량	전문성, 자금조달(자산규모), 확보인력(종업원수) 등	20
	지식재산권	특허등록, 특허 등 출원, 디자인, 상표, 각종 인증확보	10
	창업자구분	예비창업자, 초기창업자, 창업자 등	10
	주소지	지역 인재 우선	10
정성 평가 (50점)	사업계획 적정	입주유형 적합성,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	20
	시장성	시장규모 및 수요현황, 시장진출 가능성 등	20
	기타	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의지	10

※ 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하며, 적격자가 없을시 미선발할 수 있음

### 4.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9. 29.(월) ~ 9. 30.(화) / 2일간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 (팩스, 우편 등 불가) (평일 09:00 ~ 18:00)
- 문의 및 접수처 :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(☎ 033-340-2042)
  - 주소 :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, 2층 (경제정책과)

## 5. 제출서류 (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및 서류 완비 제출 바람)

### 〈공통사항〉

-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 각 1부 (붙임서식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(붙임서식)
-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(법인사업자의 경우)
-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(개인사업자의 경우)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입주신청 확약서 1부

### 〈해당사항〉

- 사업자 :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재무제표 사본(직전 2개년)  
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 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최근 3개월)  
[대체서류 : 국민연금(보험료 및 명세표)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]

### 〈기타사항〉

- 입주심사 관련 증빙자료 및 심사 참고자료
  - ↳ 수출실적증명원, 우수업체 증빙자료, 상장기업 증빙자료, 각종 특허 및 인증서 등

## 6. 기타 유의사항

- **본 모집 호실은 2층이며,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확인 필요(엘리베이터X)**  
**(※ 현장 여건상 연구실형이 적합)**
-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접수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 
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기타 입주 및 퇴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조례 및  
중소벤처기업부고시 「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」에 의함

## 참고 1

## 창업인정 기준

### □ ‘창업’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☞ 기존 기업\*(개인, 법인)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\* 폐업 기업 포함
- ☞ 기존 기업(개인, 법인)을 폐업하지 않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- ☞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(사업승계의 경우 제외)

### □ ‘창업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☞ 기존 기업\*(개인, 법인)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\* 폐업 기업 포함      ※ 조직변경, 형태변경, 위장창업에 해당
- ☞ 기존 기업(개인, 법인)을 폐업하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     ※ 법인전환, 사업승계에 해당
- ☞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     ※ 사업이전(재창업)에 해당
- ☞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     ※ 사업확장, 업종추가에 해당

※ 업종은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)

## 【붙 임】 배치도 (2층)

